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 사업 등 주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장애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5년 1월 7일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급 관리, 현황조사 및 점검, 장애상황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장애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70조의2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3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침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나.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안 제70조의3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안 제70조의4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점검 시행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함
-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보유·이용 중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황조사·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안 제70조의5 신설)

- 1)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상황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

- 상황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상황 통합관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애에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 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장애사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의 제목“(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을“(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수립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 필요한 경우 장애관리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특성과 중요도
2.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
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타 정보시스템의 수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목표 수준
2.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복구, 원인조사,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분류한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의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현황조사 및 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

장애 출입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조치계획과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법 제56조의5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은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하 “장애상황”이라 한다)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 및 연락처
4. 그 밖에 장애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상황을 통보한 후 추가

로 확인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 제56조의5제4항에 따라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조사 결과
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결과
3. 정보시스템 장애 재발방지방안
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한 장애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에 출입하여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5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조치계획과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상황관리 및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 수립 2. 장애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시행 4. 장애관리 교육·훈련 실시 5.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p>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수립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p>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장애(경미한 장애는 제외한다)가 예측될 경우에도 예상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

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 필요한 경우 장애관리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

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특성과 중요도

2.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

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타 정보시스템의 수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목표 수준
 2.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복구, 원인조사,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분류한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의 근

<신 설>

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현황조사 및 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에 출입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제출한 조치계획과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현

<신 설>

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법 제56조의5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은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하 “장애상황”이라 한다)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 및 연락처
4. 그 밖에 장애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상황을 통보한 후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 제56조의5제4항에 따라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조사
결과

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결과

3. 정보시스템 장애 재발방지방
안

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
해 필요한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한 장
애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제5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사후관
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장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
에 출입하여 장애사후관리를 실
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

의5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제출한 조치계획과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717